

2025년 5월

최신

노동뉴스

 노무법인 의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 053-719-2408

☎ 053-719-0019

- 차 례 -

1. 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총정리!	1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사업장 공표 (7개소)	2
3.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3
4. 인공지능(AI)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	4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	5
5-1. 안내서(소책자) 1부	
5-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 (표준, 요약본) 1부	

【 붙임 】

1. 2025년 확대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6
2.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누적 15건)	7
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요	8
4. 2024년 하반기 공표 사업장 사고 개요(7건)	9
5. 2025년 1분기 건설현장 주요사고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15
6. 건설현장 붕괴재해예방 핵심안전수칙	16
7. 건설현장 화재예방 핵심수칙	17
8.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	18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1. 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총정리!

-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대폭 확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 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
-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
-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 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수록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pdf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 사업장 공표 (7개소)

- 고용노동부는 4월16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 해왔고, 이번 공표는 ‘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
-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3.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9일(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
-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감독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지도

< 추락 및 붕괴,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수칙 >

구분	주요 원인	핵심 안전 수칙
추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 ■ 개구부, 단부에서 추락 ■ 사다리 작업 중 추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에 작업발판, 덮개 설치 등 □ 안전간판·추락방호망 설치, 개구부덮개고정 등 □ 안전모·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설치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 구조물 설치 중 붕괴 ■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 굴착및기초작업중 토사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준수 □ 콘크리트 타설방법 준수(집중타설 금지 등) □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용단 작업 중 불꽃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 용접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여부

-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등 사업장 화재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상·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4. 인공지능(AI)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

* 고용노동부 차관,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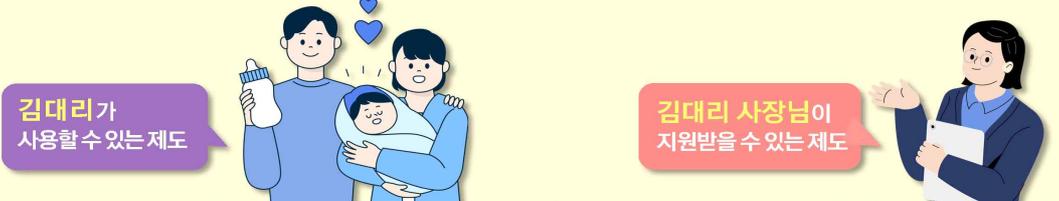
-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 를 주제로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가 4월15일 오후2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트웰브랩스에서 개최
- 간담회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서성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부회장과 이재성 트웰브랩스 대표이사, 손지운 네이버 전무, 정상원 이스트소프트대표이사(KOSA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등 12명이 참석
-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은 현장에서 우수한 인공지능(AI) 인재 확보가 어려워 양질의 교육·훈련과 우수 인재를 국내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또한 각 기업은 창의적인 업무의 특성에 맞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AI)연구개발인력은 몰입도 높은 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상근부회장은 ‘ 25년에만 1만명 이상의 인공지능(AI) 인재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장중심 실전형 인재 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AI)도 입으로 기존 직무 변화대응을 위한 재직자 전환교육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공지능(AI)기술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라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세계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
-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

- ※ 별첨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소책자) 1부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자료 (요약본) 1부

2025년에 확대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사용은?	지원은?	사업주 지원금은?	지원은?
임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유급)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월 최대 50만원
	난임치료 휴가	연간 6일 (2일 유급)	중소기업 2일		
출산	출산전후 휴가	90일 (미숙아 100일)	중소기업 90일 (미숙아 100일) 대기업 30일 (미숙아 40일)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소기업 20일		
육아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월 최대 250만원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월 최대 55만원 * 주 10시간 단축 시		

▶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기타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

인재채움 뱅크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지원	일육아동행 플래너 장려금, 대체인력 등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법인세(소득세) 세액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최대 1,300만원 지원 (중견기업 900만원)
---	--	--

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 (누적 15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4년까지('22.1.27.~'24.12.31.) 재판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 선고됨
 - (경영책임자형량) 실형1건(1년), 집행유예14건(1~3년) 선고
 - (법인형량)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최대 벌금1억원, 최소 벌금 2천만원 선고
 - (위반조항)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4건, 시행령 제4조제5호)
 - ②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2건, 시행령제4조제3호)을 가장 많이 위반하였고,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4개임

위반 조항	위반횟수
◆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제2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0
제3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12
제4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4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14
제6호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1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	4
제8호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6
제9호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1
◆ 법 제4조제1항제2호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0
◆ 법 제4조제1항제3호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0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의 점검	2
제2호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1
제3호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점검	1
제4호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0

붙임 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요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표 시기

-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1~6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하반기 중에, 7~12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다음해 상반기 중에 공표

【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실 공표 관련 법령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이 확정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중대재해
사이렌

업종
제조업

발생형태
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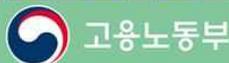
'22년 2월 16일(수) 경남 창원시 소재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제품 가공 후 제품에 묻어있는 윤활유를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로 세척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



예방대책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 후 작업하도록 합니다.
-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취급하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 사항, 착용 보호구와 착용방법 등을 미리 교육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중대재해
사이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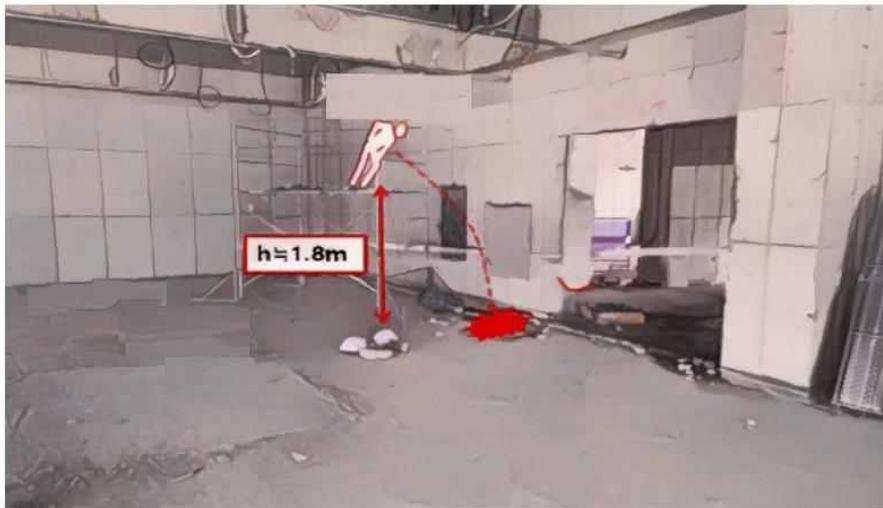
업종

건설업

재해 유형

떨어짐

‘22년 2월 26일(토) 11:45경 강원 춘천시 소재 청사 이전 공사현장에서 벽체 절단 작업 중 떨어지는 철근콘크리트에 맞아 **이동식비계가 전도되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이동식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전도 방지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합니다.
- 이동식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중대재해
사이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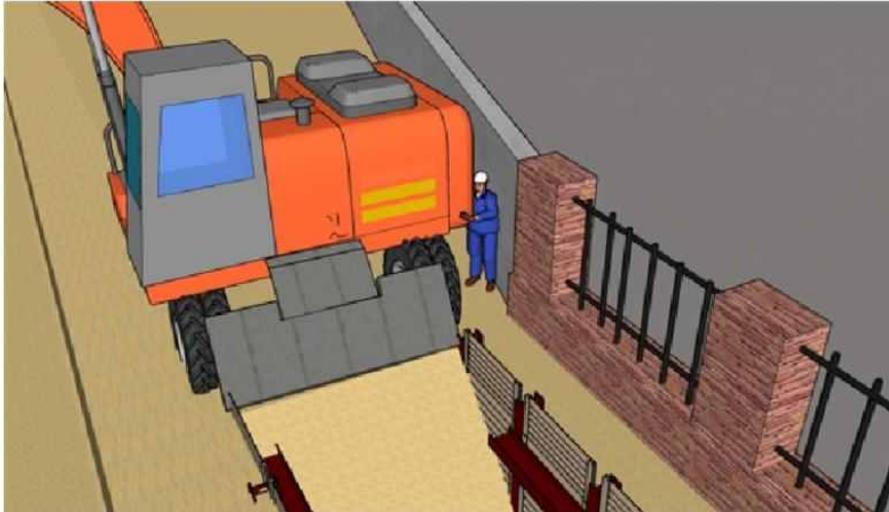
업종

건설업

재해 유형

부딪힘

‘22년 5월 19일(목) 07:40경 경남 함안군 소재 가압장(수압을 올려 수돗물 공급하는 시설) 개선 공사 현장에서 **회전하는 굴착기와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 회전반경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중대재해
사이렌

업종

제조업

발생형태

폭발·파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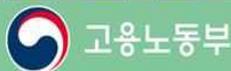
'22년 8월 10일(수) 14:24경 강원 원주시 소재
재생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폐드럼통을 분쇄기
내부에 집어넣던 중 **폐드럼통이 폭발하며 충격
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



예방대책



- 인화성 액체가 담겨있던 폐드럼통을 사용·취급하는 경우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는 등 폭발 예방 조치를 실시합니다.
- 분쇄기 사용 시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시작 전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중대재해
사이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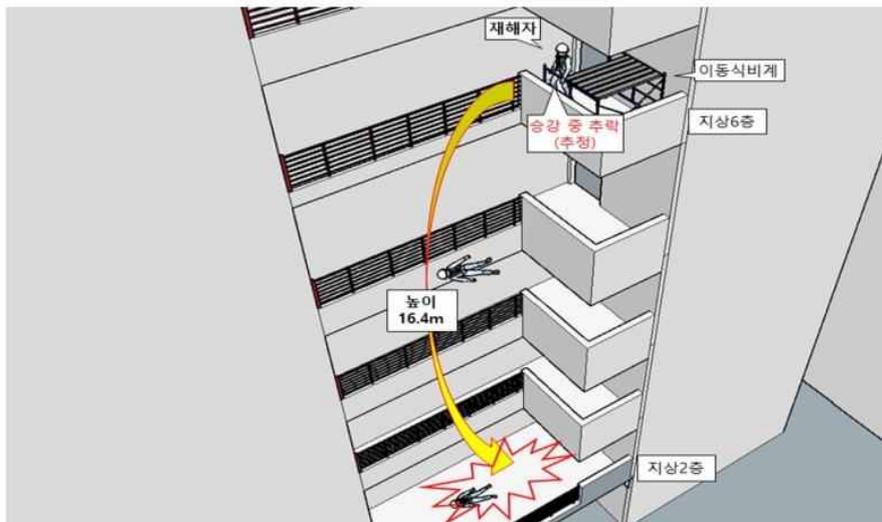
업종

건설업

재해유형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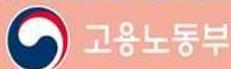
‘23년 3월 22일(수) 09:46경 전북 전주시 소재 사옥 공사현장 건물 6층 베란다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이동식비계에 올라가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이동식비계로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계단, 사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합니다.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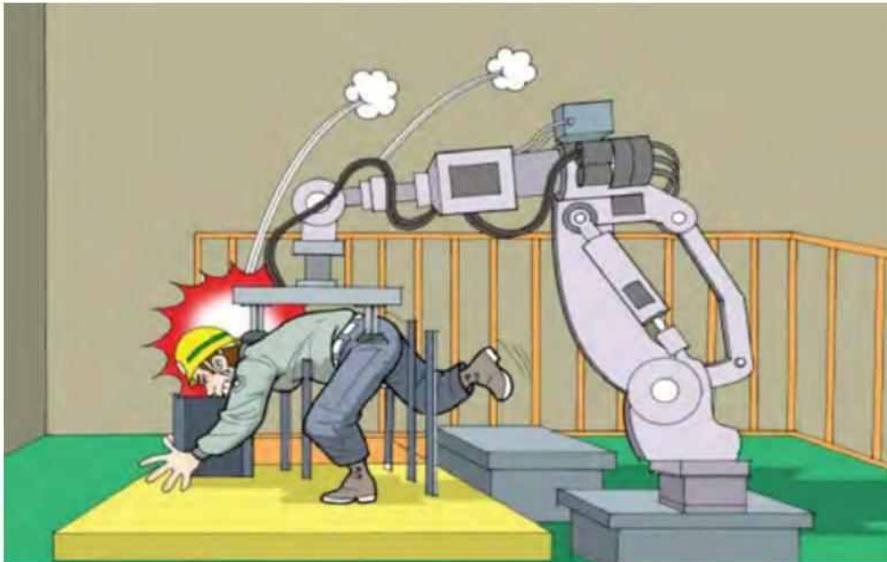
중대재해 발생 알림

중대재해
사이렌

업종
제조업

발생형태
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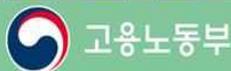
'23년 5월 11일(목) 14:25경 경기 안산시 소재 차량부품 제조 공장에서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의 점검 중 산업용 로봇과 설비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 기계의 정비·청소·검사 등의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기능이 작동되도록 관리합니다.





'25.1분기 건설현장 사고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단부·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지붕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사다리



안전모·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설치

이동식비계



최상부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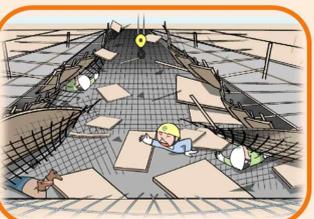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철골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조립도 준수
조립작업 시 추락방지

고소작업대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달비계



구멍줄 안전대 체결
강풍 시 작업중지

반드시 작업 전 위험요인 파악·개선·공유(TBM)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

붕괴재해예방 핵심안전수칙

구조검토, 작업계획 준수,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로 붕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고사례

'25. 2. 25.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거더 거치작업 중 붕괴
사망 4명

'23. 3. 16.

배수관 설치작업 중
옹벽이 무너져 매몰
사망 3명

'22. 1. 11.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망 6명

핵심 안전수칙

구조검토 및 작업계획 수립·준수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준수



설계도면·시방서 등
설계도서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안전한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 조립
동바리 유형별 안전조치 준수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타설

평상시 붕괴 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대피훈련 실시

작업 전 위험요인 파악·개선 및 공유(TBM)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및 대피

2025-건설안전실-36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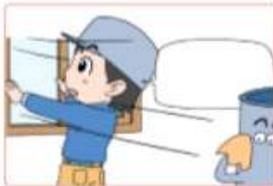
건설현장 화재예방 핵심수칙

화재 요소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가연물 차단



건설현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환기 및 가스 검지·경보장치



위험물질은 별도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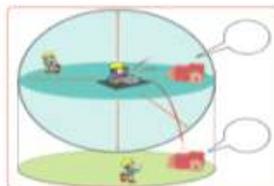
화기 관리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소화기구 비치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비상 조치



정기적 대피훈련



사용가능한 대피로 확보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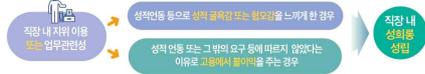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QR코드에서 확인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함
-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8. 4. 12. 선고2017두74702판결)



2.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 **육체적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인내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문자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사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화·문자·SNS·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성희롱 피해 시 대처요령

- **성희롱 피해자**
 -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서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거부사 표시)
 - 증거자료 수집(성희롱 날짜, 시간, 장소 기록, 서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
 -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나 고용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 기구 담당자가 없을 경우 사업주나 인사부서에 신고)
- **제3자(주변사람, 동료)**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지원
 - 성희롱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
 -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 ✓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전(前)**
 - **조사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

관련사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피해자 보호 의무**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됨
- ✓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후(後)**
 - **피해자 보호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관련사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관련사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하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관련사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됨

관련사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성희롱 발생 시 직장 내 해결절차(예시)

절차	내용
실질관계 조사 및 의결	사내 성희롱 조사 담당기구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청취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및 성희롱 행위자/피해자에 대한 조치 의결 *사내 성희롱 조사 담당기구: 인사부서, 영예고용영양담당관, 사내 고용상담원, 외부전문기관 등 회사 규모,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 가능 *조사기간동안 피해자·신고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조치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징계 조치 /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
후속 조치	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의식 및 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 등

*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자주 찾는 자료집]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참조

6.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하기

구분	방법	구제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요구(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고소 / 고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처벌 요구(신고자 및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 손해배상 등
법원	민사소송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 요구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신고센터

7.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불이익 금지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관련사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로부터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됨
- **관련사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반드시!)

-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교육자료, 홍보물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자주 찾는 자료집]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검색
- ✓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인사담당자, 고용상담원 등 회사 직원이 교육을 하여도 무방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지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자주 찾는 자료집]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 기관'으로 검색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및 근로자 고충상담·구제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9.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표준강의안, 리플렛(소책자), 포스터, 매뉴얼, 교육용영상 등 다운로드해서 활용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자료집]에서 '성희롱'으로 검색
-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제공**
자가진단 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Play 스토어(안드로이드폰), App 스토어(아이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검색

